

「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」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6. 9. 21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10조 만기후 이자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</p>	<p>제10조 만기후 이자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액면금액에 가입일 당시 적용 이율의 3/10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.</p>	<p>만기후 이자 지급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비적용